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허성원

대한민국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 빌딩 3층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3월 18일 (18.03.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H2018-0014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672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29일 (29.11.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2월 04일 (04.12.2018)

국제특허분류(IPC)
F24F 3/16(2006.01)i, B01D 53/04(2006.01)i, C01B 13/02(2006.01)i

출원인
삼성전자(주)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3월 18일 (18.03.2020)

심사관
황찬윤
전화번호 +82-42-481-3347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JP 2005-055058 A (MITSUBISHI ELECTRIC CORP.) 2005.03.03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10

1.1 청구항 1

청구항 1과 가장 근접한 D1에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28)가 내장된 실내기; 및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이 설치된 실외기를 포함하는 공기 조화 장치가 개시되어 있습니다(단락 [0010], [0024], [0029]; 및 도면 1, 11 참조).

다만, 청구항 1은 여과된 이산화탄소와 잔류물을 함께 실외로 배출하도록 이산화탄소제거부와 산소발생부를 제어하는 프로세서에서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D1의 실내 팬(9)을 운전하는 것과 동시에 실외 기계측에 산소부화 장치의 구동 신호를 송신하는 실내 제어장치(15) 및 상기 전송되어 온 신호를 기초를 두어, 실외측 열교환기(8)에 바깥 공기를 통과시켜 열교환 시키는 실외 팬(11)을 구동하는 것과 동시에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에 파이프 접속된 진공 펌프(102)를 구동하는 실외 제어장치(16)(단락 [0025]; 및 도면 1, 10 참조)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1.2 청구항 2-10

청구항 2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실내의 공기를 실외로 배기하기 위한 실내 공기 배기 덕트(110); 및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에서의 산소부화막의 일차측 공간에 도입되어 상기 산소부화막을 통과시키지 않고 남은 바깥 공기는 산소부화막의 2차측에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질소 농도가 높은 공기가 만들어지게 되어, 이 공기는 그대로 바깥 공기로 방출하는 점(단락 [0026], [0034]; 및 도면 12, 16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3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산소부화막에 공기를 투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 산소부화막의 2차 측에 설치한 진공펌프(102)에 따라 감압하는 것으로 고농도 산소를 추출하는 점(단락 [0013]; 및 도면 1, 1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4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실내기의 뒤편에 약 50cm 연장되어 있으며, 가스 냉매가 흐르는 커넥트 파이프(23)(단락 [0017]; 및 도면 8 참조)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5, 8-9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실내 팬(9)을 운전하는 것과 동시에 실외 기계측에 산소부화 장치의 구동 신호를 송신하는 실내 제어장치(15) 및 상기 전송되어 온 신호를 기초를 두어, 실외측 열교환기(8)에 바깥 공기를 통과시켜 열교환 시키는 실외 팬(11)을 구동하는 것과 동시에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에 파이프 접속된 진공 펌프(102)를 구동하는 실외 제어장치(16)(단락 [0025]; 및 도면 1, 10 참조)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6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공기청정기능으로서 전기 집진 방식과 정전 필터 방식을 사용하는 점(단락 [0029]; 및 도면 1, 1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7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실내의 공기를 실외로 배기하기 위한 실내 공기 배기 덕트(110); 진공펌프(102)에서 실내 공기의 배기를 행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 배기용 밸브(107, 108); 및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에서의 산소부화막의 일차측 공간에 도입되어 상기 산소부화막을 통과시키지 않고 남은 바깥 공기는 산소부화막의 2차측에 질소 농도가 높은 공기가 만들어지게 되어, 이 공기는 그대로 바깥 공기로 방출하는 점(단락 [0026], [0034]; 및 도면 12, 16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0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실외기 내부에 구비된 실외 팬(11)(단락 [0024]; 및 도면 1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10은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2. 청구항 11-14

2.1 청구항 11, 14

청구항 11, 14와 가장 근접한 D1에는 실내기에 내장되어있으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28); 및 실외기에 설치된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을 포함하는 공기 조화 장치가 개시되어 있습니다(단락 [0010], [0024], [0029]; 및 도면 1, 11 참조).

다만, 청구항 11은 여과된 이산화탄소와 잔류물을 함께 실외로 배출하도록 이산화탄소제거부와 산소발생부를 제어하는 프로세서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구항 14는 여과된 이산화탄소와 분리된 잔류물이 함께 배출되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모드와 잔류물 배출모드를 동시에 수행하는 프로세서에서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D1의 실내 팬(9)을 운전하는 것과 동시에 실외 기계측에 산소부화 장치의 구동 신호를 송신하는 실내 제어장치(15); 및 전송되어 온 신호를 기초로, 실외측 열교환기(8)에 바깥 공기를 통과시켜 열교환 시키는 실외 팬(11)을 구동하는 것과 동시에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에 파이프 접속된 진공 펌프(102)를 구동하는 실외 제어장치(16)(단락 [0025]; 및 도면 1, 10 참조)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1, 14는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2.2 청구항 12-13

청구항 12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28)가 내장된 실내기; 및 산소발생 내장유닛(101)이 설치된 실외기(단락 [0024], [0029]; 및 도면 11 참조)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3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실외기 내부에 구비된 실외 팬(11)(단락 [0024]; 및 도면 1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2-13은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3. 청구항 15

청구항 15는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4의 주요 기술적 특징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5는 청구항 14와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없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 (PCT 제33조(4))

청구항 1-15는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